

## 공간정보 '규제완화'로 국민 삶에 더 가까이

- 19일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... 업종 관계없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

**(지금까지는)**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하였으나,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어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.

**(앞으로는)** 그러나 이제는 A씨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마음껏 분석하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.

-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는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.
  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을 개정하여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되어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하여 제공\*해 왔다.
  - \* '22년부터 보안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신청자의 보안관리 수준에 대해 심사 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, 보안심사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행 중
  - 최근 디지털트윈, 자율주행, 도심항공교통(UAM)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,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.
-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,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“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정보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대섭 (044-201-3458)
	국토정보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강우구 (044-201-3460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





# 참고 1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예시

□ (자율주행차 실증) 자율차에 가공·탑재하여 시범 운행하고, 차량 관제, 가상 주행환경(시뮬레이션) 구현을 통한 사전검증 등에도 활용

활용 데이터	활용 방법	분석 결과
- 3차원 점군데이터 - 정밀도로지도(sh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자율차 시뮬레이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차원 점군데이터와 정밀도로 지도를 융합 활용</li> <li>- 현실과 같은 형태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</li> </ul> </li> <li>■ 도로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차원 좌표를 기반으로 도로 가하구조 분석 및 시설물 관리</li> </ul> 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자율주행 실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율차 시범운행</li> <li>- 차량관제 등</li> </ul> </li> </ul>	

□ (인허가 지원)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공장설립 인허가 분야에 시뮬레이션 적용

구분	규제적합도 시뮬레이션	건폐율·용적률 시뮬레이션
주요 내용	규제 및 법령, 대지면적 산출, 인접 대지와와의 이격 등을 토대로 부지조성 및 공장 건축 가능 여부 확인	건폐율·용적률을 고려하여 건물 위치선정, 크기, 층수, 일조 등을 반영하여 공장 건물의 미래 모습 도출
	  <p>토지 인허가 사전 시뮬레이션</p>	  <p>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</p>

□ (기타 활용) 공개제한 공간정보(3차원, 고해상 위성정보 등)로 상수도 누수 탐지, 가시권, 조망권, 저수량 조절, 토공량 분석, 지하 안전시설 분석 등

누수탐지 분석	가시권 조망권 분석	지하안전 분석
		
지하시설물, 3차원 정보	설계도 및 주변지역 3차원정보	지하시설물 설치연도

## 참고 2    공개제한 공간정보 분류 및 제공요건

보안 등급	공간정보 분류기준		
	위성영상	항공사진	전자지도·기타공간정보
비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노출 + 3차원 좌표 포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노출</li> </ul>	
제한적 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노출 + 해상도 1.5m 미만</li> <li>○ 정밀보정 2차원 좌표 포함</li> </ul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&lt;예시: 0.5m 위성영상&gt;</p> 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삭제 흔적 노출</li> <li>○ 해상도 25cm 미만</li> <li>○ 2차원·3차원 좌표 포함</li> </ul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&lt;예시: 12cm 항공사진&gt;</p> 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기간시설 (전기, 통신, 가스) 포함</li> <li>○ 1:1,000 이상 축척의 등고선·표고점 포함</li> <li>○ 3차원 좌표 포함 (다만 정밀도로지도는 보안성 검토 후 공개)</li> </ul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p>&lt;예시: 3차원 입체모형&gt;</p> </div>
공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위성영상</li> <li>○ 해상도가 1.5m보다 낮고 정밀보정하지 않은 위성영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좌표가 없고 군사·보안시설 삭제 흔적이 없는 해상도가 25cm보다 낮은 항공사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의 입체영상</li> <li>○ 군사시설, 국가기간시설, 1:1,000 이상 축척의 등고선·표고점이 포함되지 않은 지도</li> </ul>
<p>▶ 제한적 공개 정보는 ①연구·공공복리·안전 목적으로 관리기관 승인을 거쳐 제공되거나, ②사업 목적인 경우 보안심사를 거쳐 제공</p>			

# 참고 3    보안심사 절차

## □ 보안심사

- 관리기관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(사후관리도 포함)을 심사하는 것을 말함(보안심사규정 제2조)

法 제35조의2

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.

1.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
2.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,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## □ 보안심사 절차도

